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	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1년 연장(법 §33의3①~③)
<input type="radio"/> (감면대상자) 사업주체	<input type="radio"/> (현행과 같음)
<input type="radio"/> (감면대상)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※ 전용면적 85㎡·취득가액 3억원 이하 - (취득기간) 2024.1.10. ~ <u>2025.12.31.</u> 신축 취득 - (임대조건) <u>2025.12.31.</u> 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	<input type="radio"/> (현행과 같음) - (취득기간) 2024.1.10. ~ <u>2026.12.31.</u> 신축 취득 - (임대조건) <u>2026.12.31.</u> 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
<input type="radio"/> (감면율) 취득세 최대 50% 감면(법25%+조례25%)	<input type="radio"/> 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신설(법 §33의3④⑤)
	<input type="radio"/> (감면대상자)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자(법인·단체 제외)
	<input type="radio"/> (감면대상)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-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